중국의 농촌 주식합작기업에 관한 연구*

서석흥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개혁·개방 시기 연평균 10%에 가까운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가능케 한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농촌지역의 급속한 향진기업의 발흥이었다. 향진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강한 시장 적응력과 민활한 경영 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으나, 다른 한편 재산권 관계의 불명확성과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 현상, 규모의 영세성과 자금 부족 및 관리·기술수준의 낙후 등이 주요 해결과제로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중국의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향진기업의 기업형태를 주식합작제로 개조하는 작업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정부의 장려 정책과 제도적 뒷받침에 힘입어 그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그리하여 1995년 현재 전체 향진기업의 15%인 약 300만 개의 향진기업(그 중 향촌 집체기업은 30여만 개)이 주식합작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농촌 향진기업에의 주식합작제도의 도입은 1994년부터 도시 국유기업에서 중점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회사제도의 도입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핵심적인 개혁 작업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주식합작제는 1997년 9월의 당 제15차대회를 계기로 하여 금후 농촌의 향진기업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소형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에까지도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내의 다양한 1, 2차 자료를 정리·분석하여 중국 향진기업의 새로운 개조 형태인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전체적 모습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제I절 머리말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고, 제II절에서는 주식합작기업의 정의와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III절에서는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발전 배경과 개조의 목적을 고찰했으며, 제IV절에서는 발전 과정과 현황을 개관하였다. 제V절에서는 농촌 주식합작경제의 기본 유형과 주요 모델 및 개조방식을 살펴보고, 제VI절에서는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주식과 자본금 구성, 조직구조와 소득분배 등을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VII절 맺음말에서는 본 주제와 관련해 금후 추가적으로 고찰되어져야 할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제시하였다.

I. 머리말

중국은 1978년 12월의 개혁·개방 이후 지금까지 연평균 10%에 가까운 고속성장을 계속해 왔다. 이 시기(특히 농업부문의 성장이 다시 정체기로 접어드는 1985년 이후) 중국경제의 고속성장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것은 도시의 국유기업 부문이 아니라 도시와 농촌의 다양한 비국유기업의 발전이었다. 개혁 이후 급속히 발흥한 이들 비국유기업들 중

* 이 논문은 1996년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자유공모과제 연구비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에서도 가장 비중이 크고 중심적 지위를 차지하는 것은 농촌의 鄕鎭企業이다.[1] 1995년 향진기업의 기업수는 2,203만 개, 고용노동력은 1억 2,862만 명, 총생산액은 6조 8,915억 元의 거대한 규모에 이르고 있다. 같은 해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은 농촌사회총생산액의 78.1%를 차지하고, 그 공업생산액은 전국 공업총생산액의 55.8%를 차지하였다 (『中國統計年鑑』, 1996: 387-389).

1979에서 1995년 사이의 17년간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은 연평균 33.7%(물가상승을 고려하면 24.1%)의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하였다. 이러한 빠른 성장의 결과 향진기업은 개혁 이후 농촌의 산업구조를 다양화하고, 방대한 잉여노동력을 흡수하고, 농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고, 노동집약적인 수출상품 생산의 일익을 담당하는 등 농촌지역의 공업화와 경제발전에서 핵심적 역할을 해 온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2]

향진기업은 국유기업이나 도시의 大집체기업과는 달리 기본적으로 국가의 경제계획 밖에서 활동하며, 시장 신호에 따라 행동하고 손실과 이익을 스스로 책임지는 시장경제의 범주에 속한다. 이에 따라 향진기업은 국유기업에 비해 강한 시장적응력과 민활한 경영메카니즘을 가지고 있으며, 이것은 1980년대 향진기업의 급속한 발전을 가능케 한 핵심적 요인의 하나로 작용하였다 (서석홍, 1996a: 141-145). 그러나 이와 함께 향진기업은 그 발전과정에서 금후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도 갖고 있음이 드러났다. 집체소유인 鄕辦企業과 村辦企業에 있어서는 소유권 관계의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 현상이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고, 사적 소유인 個體·聯戶 향진기업에 있어서는 규모의 영세성과 자금 부족, 이로 인한 관리·기술수준의 낙후 등이 주요 해결과제로 지적되고 있다 (서석홍, 1996a: 159-162).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 혹은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시도로서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1980년대 중반 무렵부터 향진기업의 기업형태를 株式合作制(=股份合作制)로 개조하는 작업이 자발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몇몇 지역에서는 짧은 기간 동안에 광범위한 발전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도 이를 주목하여 1987년 3개 지역을 농촌개혁 시험구로 지정하고 주식합작제 규범화 실험을 지도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990년 2월에는 <農民股份合作企業 暫行規定>(농업부령 제14호)과 그 부속문건인 <農民股份合作企

1) 중국에서 향진기업이란 농촌지역에 존재하고 농민들에 의해 설립된 다양한 형태의 비국유기업을 총칭한다. 향진기업에는 집체소유인 鄕辦企業(향정부에서 설립 운영하는 기업) 및 村辦企業(촌민위원회에서 설립 운영하는 기업)과 사적 소유에 속하는 聯戶企業(2명 이상의 농민이 연합하여 설립 운영하는 기업) 및 個體企業(농민 개인이 설립한 기업) 등 네 가지 종류가 있다. 향판기업과 촌판기업을 합쳐 일반적으로 鄕村企業이라고 부른다.

2) 또 향진기업은 '농업은 떠나되 농촌은 떠나지 않는(離土不離鄕)' 중국식의 독특한 농촌공업화의 한 모델로서 전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도 당분간 향진기업은 중국경제의 시장경제화를 선도하고 경제의 고도성장을 담당할 실질적인 주력군으로 역할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서석홍, 1996a: 124).

業 示範章程>을 제정 반포하여 주식합작제를 제도적으로 규범화하고자 하였다. 또 1992년 12월에는 <향진기업 주식합작제의 추진과 개선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農業部關于推行和完善鄕鎭企業股份合作制的通知)>(1992 農(企)字 제 24호)를 반포하여 주식합작제 발전과정상의 몇 가지 불명확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향진기업의 주식합작제 개조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 위의 제 규정의 반포와 특히 1992년 이후 '개혁·개방의 새로운 가속화' 환경하에서 주식합작제는 전국의 농촌에 매우 광범하고 신속하게 확산되어 갔다. 그리하여 1995년 현재 중국 농촌의 주식합작기업은 총 300만 개(그 중 향촌 주식합작기업은 30여만 개) 정도로 발전하여 전체 향진기업의 15% 가까이를 차지하기에 이르렀다 (王天義 외, 1997: 9-20).

농촌 향진기업에의 주식합작제도의 도입은 1994년부터 도시 국유기업에서 중점적으로 시도되고 있는 회사제도(公司制度)의 도입과 동일한 위상을 갖는 핵심적인 개혁 작업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농촌 주식합작기업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이해는 현재 및 장래의 향진기업의 운영방식과 변화 방향을 파악하는 데 필수불가결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3]

이에 본 논문에서는 중국 내의 다양한 1, 2차자료를 정리·분석하여 중국 향진기업의 새로운 개조 형태인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전체적 모습을 개괄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이하에서는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정의와 내적 특징, 발생배경과 개조의 목적, 발전과정과 현황, 기본 유형과 개조방식, 주식과 자본금 구성, 조직구조 및 소득분배 방식 등을 차례로 고찰하겠다.

II. 주식합작기업의 정의와 특징

중국의 주식합작기업은 주식회사 제도와 합작사(=협동조합) 제도가 상호 결합·침투하여 형성된 경제조직으로, 주식제 경제와도 다르고 협동조합 경제와도 다른 일종의 새로운 기업조직 형식으로 이야기되고 있다 (曾福生·李明賢, 1994: 25; 王天義 외, 1997: 135-140). 주식합작기업은 아직 형성과정 중에 있는 경제조직이고, 또 지역에 따라 형태가 매우 다양하여 통일된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학자에 따라 그 정의와 포괄범위, 경제적 성격과 지위에 대한 견해가 다양하고, 심지어는 중국정부(농업부)에서 반포한 공식 문건들에서조차도 정의상 약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4] 이것들을 종합적으로

3) 또한 1997년 9월 12-18일에 열린 중국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대회에서 江澤民 총서기는 <정치보고>를 통해 앞으로는 도시의 국유기업에서도 주식제와 주식합작제의 방식을 적극 활용해 개혁을 가속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천명했다 (江澤民, 1997: 2-23). 이에 따라 도시의 중소형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의 기본적인 개혁방향도 주식합작제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농촌 주식합작기업에 대한 이해는 금후 중국 국유기업 개혁의 주요 방향을 예측하는 데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4) 1990년 4월의 <暫行規定>의 제2조에서는 '농민 주식합작기업'이란 "**3호 이상의 노동 농민**

고려하여 우리는 주식합작기업을 개략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즉 "주식합작기업은 2-3명 이상의 노동자(혹은 농민) 전원이 자금, 실물, 기술, 노동력, 토지사용권 등을 출자해 자발적으로 조직하여 생산 경영 혹은 서비스활동에 종사하는 경제조직으로, 민주적 의사결정과 기업관리를 실행하고, 자본에 따른 이익배당과 노동에 따른 분배의 상호 결합 및 공공축적을 행하며, 독립채산·자주경영하고 독립적인 민사책임을 지는 기업제도 형식"이다.

이상의 정의로부터 우리는 다음 3가지 측면에서 주식합작기업의 내적 특징을 정리할 수 있다 (王天義·徐國華, 1996: 33-34 참조).

1. 전원 출자

자금형성 방식으로부터 볼 때 주식합작기업은 원칙적으로 노동자(혹은 농민) 전체가 공동으로 출자하여 기업 운영에 필요한 대부분의 자금을 마련한다. 즉 주식합작기업의 직공이 되기 위한 기본 전제조건은 기업에 일정한 자금(실물, 기술, 노동력, 토지사용권 등도 포함)을 출자한 주주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자금모집 방식과 합작사 제도의 출자자 전원의 노동참가 원칙이라는 두 가지 특징을 결합한 것이다. 이는 또한 주식합작기업이 자본형성과 직공모집 방식에 있어서 일정한 폐쇄성을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이러한 폐쇄성이 절대적인 것은 아니다. 직공이 출자하여 형성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윤배당을 받는 보통주로서 이것이 기업 주식의 주요 부분을 형성하지만, 의결권이 없는 우선주의 형식으로 기업직공 이외에 법인, 사회단체, 개인 등으로부터 사회자금 흡수도 가능하다. 또 일부 지역의 주식합작기업의 경우에는 자금을 출자하지 않은 순수한 고용노동자의 채용도 이루어지고 있다.

이 협의에 따라 자금, 실물, 기술, 노동력 등을 주식으로 출자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해 생산 경영활동에 종사하는 경제조직으로, 국가의 계획적 지도를 받고 민주적 기업관리를 실행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를 중심으로 하되** 일정 비율의 주식배당과 공공축적을 행하고, 독립적으로 민사상의 책임을 지고 법규에 근거해 허가를 받아 설립한 경제조직을 가리킨다"고 규정하였다 (農業部, 1990a: 116). 또 1992년 12월의 <通知>에서는 '주식합작기업'이란 "**2명 이상의 노동자 혹은 투자자가** 규정이나 협의에 따라 자금, 실물, 기술, 토지사용권 등을 주식으로 출자하여 자발적으로 조직해 법에 따라 각종 생산 경영 서비스활동에 종사하고, 민주적 기업관리를 실행하며, **노동에 따른 분배와 주식에 따른 분배의 상호 결합과** 공공축적을 행하는 기업법인 혹은 경제실체를 가리킨다"고 규정하였다. 나아가 주식합작기업은 "주식제의 자금모집, 주식에 따른 분배와 경영관리 방면의 합리적 핵심을 유지하고, 주주의 노동참가, 노동에 따른 분배와 공공축적 등 합작제의 기본 원칙을 흡수함으로써, 주식제와 합작제의 장점을 모아 일체화시킨 일종의 신형 사회주의 집체경제조직 형식"이라고 규정하였다 (農業部, 1992: 306-307).

2. 민주적 의사결정과 기업관리

주식합작기업의 직공은 원칙적으로는 모두 동등하게 기업의 의사결정과 관리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물론 실제 기업의 운영에 있어서 민주적 기업관리는 주주총회(혹은 주주 대표대회)나 직공대회(혹은 직공 대표대회)를 통해서 실현된다. 주주총회(혹은 직공대회)가 기업의 최고 권력기구로서 이사회와 감사회를 선출하고, 이사회가 경영자(공장장 혹은 총경리)를 초빙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주주인 직공과 법인소유자의 민주적 권리가 실현되는 것이다. 이때 각 직공의 권리는 원칙적으로는 출자지분에 관계없이 동일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 운영에 있어서 표결권 분배 방식에는 3가지가 있다. 첫째는 1인 1표제이고, 둘째는 1주 1표제이며, 셋째는 1인 1표제와 1주 1표제를 결합한 방식이다. 셋째 방식은 1인 1표제를 기초로 하되 대주주에 대해서는 표결권을 가중해 주는 것이다. 주식이 전직공에게 골고루 분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첫째와 둘째의 방식은 사실상 동일한 것이고, 일부 주주가 다량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셋째 방식을 주로 사용한다.

3. 자본에 따른 이익배당과 노동에 따른 분배의 상호결합

주식합작기업의 분배는 우선 직공에 대해 시간제 임금 혹은 성과급 임금제도를 채택하여 임금을 지급하고, 연말결산 후에 주주에 대한 주식배당을 실시한다.[5] 주식배당은 세후이윤 중 먼저 전년도 적자분을 보전하고 법적 공적금과 공익금을 적립한 후, 우선주에 대한 이자(및 배당)를 지불하고 보통주에 대한 배당을 실시한다. 보통주에 대한 배당은 출자액에 비례한 배당과 노동에 따른 배당을 분리하여 실시하는데 양자의 비율은 직공대회(혹은 주주총회)에서 정한다. 이는 주식합작제가 '자본과 노동의 직접적 연합'의 성격을 갖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실제 운영과정에서는 자본에 따른 분배가 중심이 되고 노동에 따른 배당은 보통주 혹은 분배가능 부분의 30% 이내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III.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발전 배경과 개조의 목적

중국 향진 집체기업의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는 기본적으로 공유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불명확성 문제를 개혁하려는 것임과 동시에 사회주의 체제하에서 여전히 금지구역으로 남아 있는 '사유화'의 영역을 피해가려는 일종의 타협책으로 등장한 것이라 할 수 있다 (孔涇源, 1995: 22-23). 이와 함께 집체와 사영 향진기업 일반이 당면하고 있는 자금모집 애로문제의 타개와 외부의 경쟁격화에 대응하려는 노력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주식합작기업의 발전 배경 혹은 개조 목적은 다음 네 가지 요인으로 나누어 생

5) 曾福生・李明賢, 1994: 28; 陳劍光, 1994: 407.

각해 볼 수 있다.[6]

첫째, 집체소유 향진기업에는 일반적으로 '재산권 관계의 불명확성' 문제와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 문제가 보편적으로 존재하고 있다.

향진 집체기업의 재산 소유권은 명의상으로는 향주민 혹은 촌주민 전체에 귀속되지만[7] 실제로는 지역의 향촌정부(향정부·진정부 및 촌민위원회)가 향촌주민의 대표 자격으로 기업소유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에 향촌정부 및 당위원회의 소수 간부들이 기업의 실제적인 주인이 되어 기업경영에 대한 간섭[8], 과다한 이윤상납 요구, 규정외 할당금(攤派)의 징수, 기업 자산의 사적 유용 등을 행하고 있다. 또 많은 향촌기업들의 운영에 있어서 기업 자체의 이익목표와 향촌정부의 정책성 社區[9](=지역)목표가 동시에 추구되고 있다.[10] 이 두 가지 목표 사이에는 종종 충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이때 향촌기업은 자신의 기업목표를 희생하여 사구목표를 충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11] 심지어 일부 기업에서는 재무상으로 정상적인 생산·경영 활동을 위한 지출과 향촌정부의 행정비용 지출 및 지역의 공공·복리사업을 위한 지출이 구분없이 뒤섞여 있다. 이는 향촌기업의 재산권 구조의 복잡성과 불명확성을 반영하는 것이고, 이러한 재산권 구조 하에서는 기업활동에 대한 규범적인 제약 메카니즘이 존재할 수 없다. 이는 정상적인 기업의 경영활동을 곤란하게 하고 경영효율의 향상과 자본축적을 통한 기업의 발전을 크게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향진기업의 '재산권 구조의 명확화'와 이를 통한 '정부와 기업의

---

6) 洪輝, 1996: 8-10; 安希伋, 1992: 19-20; 王天義 외, 1997: 37-43; 周錦廷·唐慧斌, 1993, 33-34 등 참조.

7) <中華人民共和國鄕村集體所有制企業條例>(1990.7)의 제18조(中華人民共和國 農業部等 編, 1990: 81).

8) 향촌기업의 공장장과 부공장장 등 기업간부의 임명권은 기본적으로 향촌정부와 당조직이 장악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경영자는 자신의 실질적인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이들의 경영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다. 또 기업의 신설이나 이전, 합병, 폐쇄, 생산품목의 변경, 타기업과의 연합, 분공장의 설치, 잉여설비의 판매 등 기업재산권의 변동과 관련된 일체의 권한은 기업 자체가 아니라 향촌정부에 귀속된다 (嚴善平, 1992: 62-65; 陳劍波, 1994: 20).

9) 중국에서 社區란 鄕이나 鎭, 혹은 그 하부단위인 村 등의 지역사회를 의미한다.

10) 향촌기업 자체의 목표는 여타 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극대화와 자본축적을 통한 기업의 발전, 기업경영자와 종업원의 수입최대화 등이다. 이에 대해 향촌정부의 社區性 정책목표는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취업기회의 증대, 향촌정부의 운영에 필요한 상납이윤의 확보 등이다 (Wang Xiaolu, 1990: 227-230; 陳乃醒 외, 1994: 56).

11) 예컨대 일부 기업에서는 향촌정부의 압력하에 적정수준 이상으로 노동자를 과잉고용하기도 하고, 재투자와 기술개조를 위한 자본축적분을 희생하면서까지 향촌정부에 이윤상납을 하기도 한다. 또 많은 향촌정부(및 당·정간부)는 향촌기업을 자신의 '小金庫', '돈낳는 나무'로 간주하여 정기적인 이윤상납 이외에 각종 명목의 자의적 할당금을 징수한다 (Wang Xiaolu, 1990: 227-230; 佐藤宏·大島一二, 1992: 50-52; 古澤賢治, 1993: 110-111).

분리'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었고, 이를 위한 유용한 방안으로서 향진기업의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가 출현하게 되었다. 주식합작제도하에서 이제 향촌정부는 향촌기업의 행정적 관리자가 아니라 자기소유 지분의 주식을 바탕으로 한 주주의 자격으로 제도적 절차에 따라 기업의 경영의사 결정과 이익배당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다. 또 기업경영자도 이전에는 향촌 행정조직에 대해 책임을 졌지만 개조 후에는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뀌게 된다.

둘째, 이와 관련해 집체소유의 향진기업에서는 공유제 일반이 가지고 있는 재산권의 '虛置' 문제가 존재하고 있다. 즉 향진 집체기업의 재산은 명목상으로는 향촌주민 모두의 공동소유이지만 실제로는 아무도 확실한 책임을 지지 않는 주인없는 재산이고, 따라서 생산자와 경영자 모두 생산·경영활동에 대한 적극성을 결여하고 기업에 대한 응집력이 약하게 되는 것이다. 예컨대 기업의 경영자[12]는 기업의 장기적 발전보다 단기행위를 선호하고, 심지어는 자신의 직권을 이용해 기업 자산을 빼돌려 '공장 밖에 따로 공장을 차리는' 행위를 하기도 한다. 또 노동자도 기업에 대한 주인의식과 책임감이 없고 특히 유능한 관리·기술인재가 쉽게 공장을 떠나는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에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를 통해 경영자·간부를 포함한 전 직공들에게 각자의 직위나 기술, 기업 공헌도에 따라 주식을 분배해 주어 그들로 하여금 명실상부한 기업의 주인이 되게 함으로써 위의 문제점들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이다.

셋째, 주식합작제로의 개조의 또 하나의 주요 목적은 향진기업이 부딪친 자금모집 확대상의 애로를 타개하기 위한 것이다. 향진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자기축적 자금만 가지고서는 부족하고 외부자금의 유입이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중국 향진기업의 발전은 주로 농업은행과 농촌 신용합작사의 대출에 의존해 왔고 유휴 사회자금의 흡수는 적었다. 높은 은행대출 의존비율에 의해 정부의 금융긴축 정책시에는 파산하는 기업이 속출했고[13] 더 이상의 확대재생산 투자가 곤란하게 되었다. 이에 많은 향진기업은 주식합작제의 도입을 통해 제도적인 외부자금 모집통로를 마련하고 集資능력의 강화를 추구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향진기업은 사회의 유휴자금을 흡수하여 기업의 확대발전을 꾀함과 동시에, 은행·신용사에 대한 의존성과 정부 금융정책의 영향을 낮출 수 있게 되었다.[14]

넷째, 향진기업은 그 발전의 초기단계에서는 풍부한 저임노동력을 기초로 한 저가제

12) 향진 집체기업들의 다수는 경영청부책임제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기업경영자는 보통 청부경영자이다.

13) 예컨대 개체·연호 향진기업보다 은행·신용사 대출의존 비율이 더욱 높은 향판·촌판 향진기업의 경우, 1988년 10월부터 1991년 말까지 경제조정(=긴축)정책이 실시되자 기업수가 1988년의 159.1만개에서 1991년에는 144.2만개로 크게 줄어들었다. 또 위의 네 종류 전체 향진기업의 수도 1988년의 1888.2만개에서 1990년에는 1850.4만개로 감소했다가 금융긴축이 완화된 1991년에야 1988년 수준을 회복했다 (『中國統計年鑑』, 1995: 363).

14) 또 주식합작제는 일반적으로 투자자가 기업을 떠나더라도 기존 투자자금의 退出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투자자금의 퇴출로부터 오는 불안정성 문제도 염려할 필요가 없다.

품의 생산만 가지고서도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가지고 급속한 성장이 가능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외부로부터 경쟁압력이 점차 격화되고 향진기업의 파산이 속출하자 이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 및 관리능력의 향상 문제가 대두되었다. 외부의 경쟁압력은 ① 국유기업의 전면적인 개혁 개시, ②사영기업의 맹렬한 성장, ③외자계기업의 급속한 발전,[15] ④중국의 WTO 가입 임박으로 인한 고품질의 외국제품 유입 등 다양한 방면으로부터 왔다. 이러한 점증하는 경쟁압력에 직면하여 향진기업은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를 통해 기업 내부의 재산권 구조와 경영메카니즘을 개혁하여 생산·경영효율을 높여야 할 현실적 필요성에 직면하게 되었다. 또 향진기업의 발전 초기에는 농촌사회의 이른바 '能人'(개척정신이 풍부한 관리인재와 유능한 기술자)의 주도적 노력이 기업 성공에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 그러나 기업규모가 커지고 선진설비가 도입됨에 따라 과거와 같이 '능인'만 가지고서는 더 이상의 기업발전이 곤란해졌고, 보다 전문화된 기술인력과 관리인재가 요구되었다.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를 통해 만들어진 재산권 구조의 변화는 전문화된 기술·관리인재의 능력과 공헌을 출자 지분으로 인정하여 주식을 배당해 줌으로써 이들의 유인에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IV.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발전 과정과 현황

1. 발전 과정

중국 농촌에서 주식합작기업(혹은 주식합작경제)은 지금까지 대략 다음의 세 단계를 거쳐 발전해 왔다 (王天義 외, 1997: 9-19, 155-158).

1) 자발적 생성단계(1982-1987년)

1980년대에 들어와 중국에서는 농가생산 청부책임제의 실시와 향진기업의 육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농촌개혁이 전면적으로 시행되었다. 이 시기에 중국의 여러 농촌지역에서는 각기 자신이 당면한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주식제와 합작제의 연합적 성격을 지닌 주식합작경제가 자연발생적으로 출현하였다. 이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해, 즉 ①山東省 淄博市 周村區 行長村의 경우와 같이 수 십년간 축적한 집체재산을 주식으로 환산해 촌민에게 분배하고 주식에 따른 배당을 실시하는 방식을 통해, ② 浙江省 溫州地區와 安徽省 阜陽地區의 경우와 같이 가정기업 내지는 戶辦·聯戶辦기업의 규모 확대와 신설비 도입을 위한 자금 연합의 과정에서, ③河南省 密縣과 廣東省 吳川縣의 경우와 같이 수명의 농민이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소형 합작기업을 설립해 자원개발과 제품생산을 하는 방식을 통해, ④대부분 지역의 향촌 집체기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재산권 관계의 불명확성과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

15) 국유기업은 자금, 설비, 인력 면에서, 외자계기업은 자본, 정보, 관리방식, 효율 면에서, 사영기업은 민활한 경영 메카니즘 면에서 각각 향진기업에 비해 우월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업개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출현하였다. 이리하여 1986년 말~1987년 초 무렵이 되면 전국에 이미 자연발생적으로 형성된 무시못할 숫자의 주식합작제기업 혹은 準주식합작제기업이 존재하게 되었다.[16]

2) 실험지구 선정 및 지도단계(1987-1991년)

위와 같은 발전 상황을 배경으로 1987과 1988년에 중국정부(국무원)에서는 주식합작제의 건립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3개의 향진기업 제도건설 시험구를 선정하였다. 선정된 지역은 ①향촌 집체기업의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를 중점 고찰하기 위한 山東省 淄博市 周村區, ②개체·사영기업의 주식합작기업으로의 전화를 중점 고찰하기 위한 浙江省 溫州地區, ③호판·연호판기업의 주식합작기업으로의 전화를 중점 고찰하기 위한 安徽省 阜陽地區 등이었다.[17] 이들 지역에서의 실험과 각지의 경험을 바탕으로 중국정부(농업부)에서는 1990년 2월 <農民股份合作企業 暫行規定>(농업부령 제14호)과 그 부속문건인 <農民股份合作企業 示範章程>을 제정 반포하여 주식합작제를 제도적으로 규범화하였다.

이 기간동안 전국 농촌에서 주식합작경제는 매우 급속히 발전하였다. 1992년 6~10월 농업부에서 실시한 주식합작기업 발전상황에 대한 전국 75개 현의 표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현에는 평균 340개의 주식합작제기업이 있고, 그 비중은 향판기업의 3.4%, 촌판기업의 12.5%, 개체·연호기업의 3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발전 심화단계(1992년 이후)

1992년에는 연초 등소평의 "南巡講話"를 계기로 '개혁·개방의 새로운 가속화'가 이루어지고, 그해 10월의 당 제14차대회에서는 강택민 총서기에 의해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이 공식 천명되었다. 또 1993년 11월의 당 14기 3중전회에서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체제 건립의 약간의 문제에 대한 결의>를 통해 향진기업의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와 재산권 제도의 개혁 및 경영메카니즘의 개선이 요구되었고, 그해 12월에는 <회사법(公司法)>이 반포되어 주식제 및 주식합작경제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주어졌다. 이 속에서 1992년 12월 농업부는 <향진기업 주식합작제의 추진과 개선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農業部關于推行和完善鄕鎭企業股份合作制的通知)>(1992 農(企)字 제24호)를 반포하여 주식합작제 발전과정상의 몇 가지 불명확한 문제들[18]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향진기업의

16)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주식합작제를 실시해 온 대표적인 지역으로는 위에 언급한 지역 이외에 深圳市 寶安縣, 廣州市 天河區, 廣東省 封開縣과 潮陽縣, 江蘇省 海門縣, 河北省 河澗市와 滄州地區 등을 들 수 있다 (梁義 외 主編, 1993: 72).

17) 이들 지역에는 모두 시험구 영도소조와 판공실을 설치하고 <주식합작제 관리방법>, <잠정규정> 및 <시범장정> 등을 제정하여, 6개 항목에 걸친 주식합작제 개혁의 전반적 실험을 실시하였다.

18) 구체적으로 여기에는 주식합작기업에 대한 인식 문제, 기업의 법률적 지위의 불명확성 문제, 규범화된 관리의 결핍 문제 등이 포함된다.

주식합작제 개조를 전국적으로 더욱 확대하고자 하였다.[19]

이러한 완화된 정치·사회·경제적 환경과 정부의 정책적 장려 하에서 이 시기 주식합작기업은 더욱 빠른 속도로 발전하였다. 농업부의 통계에 의하면, 1995년 말 전국 농촌의 각종 주식합작제기업은 이미 300여만 개로 발전하여 향진기업 총수의 15% 가까이에 이르렀다. 그 중 향촌 주식합작기업은 20여만 개에 이르러 전체 향촌 집체기업의 20% 가량을 차지하고 있다. 특히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 제성의 경우는 그 비중이 더욱 높아 주식합작기업이 전체 향진기업의 20~30% 가량을 차지하고, 그 중 강소, 산동, 절강성의 경우는 50% 내외에 달하고 있다. 온주시의 경우는 1995년 4만여 개의 주식합작기업이 실현한 공업총생산액과 이윤·세금총액이 시 전체 공업총생산액과 이윤·세금총액의 60% 이상을 차지하였다고 한다. 또 안휘성의 경우도 34% 내외의 향촌 집체기업이 주식합작제로 개조하였다고 한다.

2. 현 황

향진기업의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는 대체로 사적 소유인 개체·연호 향진기업보다 향판기업과 촌판기업 등 집체소유 향진기업에서 보다 활발히 진행되었다. 위에서 보았듯이 향진기업의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의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목적은 집체소유 향진기업이 갖고 있는 재산권 관계의 불명확성과 이로 인한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 현상 및 공유제 일반의 재산권 '虛置' 현상을 개혁(혹은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필자가 통계를 입수할 수 있었던 1994년도의 향촌 주식합작기업을 중심으로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현황을 정리하여 보기로 하자.

<표-1> 전국 향촌 주식합작기업의 절대치와 비중(1994년)

항 목	단 위	향촌기업 전체	그중 향판기업	촌판기업
기 업 수	개	204,055	56,611	147,444
	%	12.4	13.4	12.0
종업인원수	명	7,998,044	3,975,396	4,022,648
	%	13.6	13.4	13.7
총 생 산 액	억元	4,829.8	2,664.9	2,164.9
	%	16.7	17.7	15.7

註 : %는 전체 향촌기업 중 주식합작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中國鄕鎭企業年鑑』, 1995년판, pp.232-233 및 『中國統計年鑑』, 1995년판, pp.363-365로부터 작성.

19) 농업부는 또 향진기업 재산권 제도의 개혁을 촉진시키기 위해 1994년 3월 31일 <향진기업 재산권제도 개혁의 의견>을 제출했는데, 여기에도 향진기업의 주식합작제로의 개조가 재산권 제도 개혁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포함되어 있다 (農業部, 1994: 65-67)

<표-2> 전국 향촌 주식합작기업의 주요지표와 비중(1994년)

구 분	영업수입	부가가치	이·세총액	부과세금	고정 자산원가	유동자산
절대치(억元)	3,948.1	1,164.1	423.3	167.3	1,124.8	1,308.3
비중(%)	15.7	na	19.0	15.5	17.0	15.5

註 : %는 전체 향촌기업 중 주식합작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을 나타냄.
자료: 『中國鄕鎭企業年鑑』, 1995년판, pp.232-233 및 『中國統計年鑑』, 1995년판, pp.366-367로부터 작성.

<표-1>은 1994년 전국 향촌 주식합작기업의 기업수, 종업인원수 및 총생산액의 절대치와 전체 향촌기업 중의 비중을 정리한 것이다. 전국적으로 약 20여만 개의 기업이 주식합작제를 시행하고 있고, 그 비중은 전체 향촌기업의 12.4%에 해당한다. 이는 1993년의 13만 2,785개, 비중 8.5%에 비해 약 50% 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아직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지는 않지만 증가속도가 매우 빠름을 알 수 있다. 또 향판기업과 촌판기업 중 향판기업의 전환 비중이 약간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종업인원수와 총생산액의 비중은 기업수의 비중보다 약간 높은 13.6%와 16.7%를 차지하고 있다. 또 <표-2>를 보더라도 영업수입, 부가가치, 이윤·세금 총액, 부과 세금, 고정자산 원가, 유동자산 등의 비중이 기업수의 비중보다 적게는 3%에서 많게는 6.6% 포인트까지 높다. 즉 전체 향촌기업 중 평균보다 자산규모가 크고 따라서 총생산액과 이윤·세금 규모 등이 비교적 큰 기업들이 보다 활발하게 주식합작기업으로 전환하였음을 추론할 수 있다.

<표-3>은 전국의 31개 성·시 중에서 향촌 주식합작기업이 가장 발달한 상위 10개 성을 순위별로 정리한 것이다. 기업수에서는 강서성이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기업 규모가 매우 작아[20] 종업인원수, 자본금, 총생산액 등에서는 7-9위로 밀리고 있다. 전체적으로 볼 때 山東, 江蘇, 浙江省 등 3개 성이 함께 최선두 그룹을 이루면서 타 성들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있다. 이 3개 성은 전체 향진기업의 발전에 있어서도 전국에서 최선두 그룹을 이루고 있는 지역이다.[21] 또 <표-3>의 상위 10개 성 중 山東, 江蘇, 浙江, 河北, 遼

20) 강서성은 1993년에는 향촌 주식합작기업수가 8,689개에 불과하여 전국 7위에 그쳤는데, 1994년에 들어서 전국 1위로 그 수가 급속히 증가하였다. 1994년 강서성의 향촌 주식합작기업의 비중은 전성 향촌기업수의 43.2%로서, 전국 평균(12.4%)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그러나 1기업당 종업인원수는 17.9명에 불과하여, 전국 평균인 39.2명의 절반 이하로 매우 낮다 (『中國鄕鎭企業年鑑』, 1994: 362; 1995: 232 및 『中國統計年鑑』, 1995: 364).

21) 1994년 산동, 강소, 절강성 향진기업의 총생산액이 전국 향진기업 총생산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16.0%, 15.4%, 11.3%로서 1, 2, 3위를 차지했다. 이는 4위인 하북성의 비중이 6.0%임에 비추어 볼 때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이다 (『中國統計年鑑』, 1995: 365).

寧, 廣東省 등 6개 성은[22] 동부 연해지역에 속하는 성들이다.[23] 즉 농촌 주식합작기업도 전체 경제 및 향진기업의 발전과 마찬가지로 동·중·서부 지역이 함께 균형적으로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동부 연해지역을 중심으로 하여 그 발전이 불균등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3> 상위 10개 성의 향촌 주식합작기업 현황(1994년)

순위	기업수		종업인원수		자 본 금		총생산액	
	성	개	성	명	성	만元	성	만元
	전 국	204,055	전 국	7,998,044	전 국	10,563,043	전 국	48,298,111
1	강 서	28,132	산 동	1,574,591	산 동	1,967,549	산 동	14,016,038
2	산 동	27,199	강 소	1,055,907	강 소	1,484,975	강 소	8,796,754
3	절 강	24,699	절 강	949,753	절 강	1,249,387	절 강	6,508,113
4	호 북	23,672	하 북	554,040	하 북	782,755	호 북	2,449,241
5	강 소	14,100	하 남	532,950	하 남	709,465	하 북	2,332,014
6	하 북	13,193	호 북	505,490	광 동	609,700	하 남	2,282,883
7	하 남	12,442	강 서	504,425	요 령	479,419	요 령	1,988,572
8	흑룡강	9,116	안 휘	317,785	호 북	456,840	강 서	1,972,642
9	안 휘	7,858	요 령	298,788	강 서	443,808	광 동	1,116,424
10	요 령	7,753	사 천	238,875	안 휘	330,043	복 건	953,121

자료: 『中國鄕鎭企業年鑑』, 1995년판, pp.232-233.

V. 농촌 주식합작경제의 기본 유형과 개조방식

중국 농촌의 주식합작경제에는 기본적으로 企業型 주식합작제와 社區型 주식합작제의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중 기업형 주식합작제(=주식합작기업)가 그 중심을 이루고 전체 주식합작경제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24]

22) 총생산액 10위인 복건성을 포함하면 7개 성이 됨.

23) 나머지 성들 중 하남, 호북, 강서, 안휘, 흑룡강성은 중부지역에 속하고, 사천성만이 서부지역의 성이다.

24) 北京農大農經學院農業雙層經營課題組, 1992: 29-30; 周錦廷·唐慧斌, 1993: 34-35; 孔涇源, 1995: 23-26.

1. 기업형 주식합작제

기업형 주식합작제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주식합작기업이다. 여기에는 다시 원래의 향촌 집체기업에 주식제 요소를 도입하여 개조한 것과 사적 소유인 기존의 개체·사영기업을 전환하여 형성한 것의 두 가지가 있다. 전자의 대표적 모델에는 山東省 淄博市 周村區의 주식합작기업과 江蘇省 蘇州市의 주식합작기업이 있고, 후자의 대표적 모델에는 浙江省 溫州市의 주식합작기업이 있다.[25] 이 중 많은 지역에서 원래의 향촌 집체기업을 개조한 전자의 모델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이밖에 기존 기업의 개조나 전환이 아니라 처음부터 주식합작기업의 형식으로 기업을 신설한 것도 다수 존재하고 있다. 아래에서는 기업형 주식합작제의 대표적인 두 가지 모델인 山東省 淄博市 周村區의 모델과 浙江省 溫州市의 모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1) 周村모델[26]

周村모델은 원래의 향촌 집체기업을 주식합작기업으로 전환시킨 대표적인 모델이다. 주촌구의 향촌 집체기업은 원래 경영청부책임제를 시행했는데,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 현상이 심각하고 소유권과 경영권 사이의 모순이 격화되어 기업 발전이 벽에 부딪쳤다.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일찍이 1980년대 후반부터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를 적극 추진했다. 개조 방식과 절차는 다음과 같다.

우선, 기업의 현존 자산가치를 재평가하여 주식으로 환산한다. 자산평가는 상급 향진기업 관할기관의 주도하에 자산평가기구를 구성하여 실시하는데, 여기에는 자산평가 자격을 가진 전문가와 향촌정부 인원, 기업간부 및 직공대표가 참가한다. 평가자산의 범위는 기업의 유형자산만이 아니라 기술, 상표권 등 무형자산까지 포함시킨다.

다음에, 향촌집체주, 국가주, 개인주, 사단법인주, 외자주 등 주식합작기업을 구성하는 주권을 설정한다. 주식으로 평가 환산한 기업자산은 7 : 3 혹은 6 : 4의 비율로 향촌집체주와 직공기본주로 나누어 분배한다. 향촌집체주의 설정은 향촌집체의 기업설립 당시 및 매년의 추가투입분과 그 증식재산에 근거한 것이다. 또 기업이 매년 축적한 자체자산이 있는데 그 일부를 각 직공의 재직기간, 기술, 직위, 직무 등을 고려하여 직공 개인에게 분배한다. 이것이 직공기본주이다. 각 직공은 이 기본주에 대해 이익배당권만을 가질 뿐 매매, 양도, 상속은 할 수 없다. 또 직공은 기본주 분배의 전제조건으로 일정 비율의 자금을 기업에 투입하여 직공개인주를 구입해야 한다. 이밖에 국가의 기업에 대한 감면세

---

25) 安希伋, 1992: 18; 孔涇源, 1995: 23-24; 岑耀劍, 1994: 51-54. 이외에 호관·연호관 향진기업을 주식합작기업으로 전환한 安徽省 阜陽지구의 주식합작기업이 있다. 이 阜陽지구의 주식합작기업은 전체적으로 합작제의 요소가 강하고, 전환의 동인이나 특징은 溫州의 주식합작기업과 매우 유사하다 (王天義, 1997: 193).

26) 陳劍光, 1994: 406-407; 孔涇源, 1995: 24-26; 王天義 외, 1997: 170-180.

액과 세전 대출상환금으로 형성한 국가주가 있다. 이 국가주는 기업의 존속기간 동안 국가에 이전하지 않고 기업이 무기한 보유한다. 단 국가주의 배당금은 기업의 확대재생산 투자에만 사용해야 하고 개인에게 분배할 수 없다. 또 기업은 社區조직 밖의 사단법인(과학연구기관, 대학교, 타기업 등)이나 개인, 외국자본의 각종 생산요소 투입을 받아들여 사단법인주와 개인주, 외자주를 구성한다.[27]

셋째로는 '주주대표대회-이사회와 감사회-공장장·사장초빙' 등으로 이루어지는 조직관리기구를 구성하여 정부와 기업의 분리, 소유권과 경영권의 분리, 주식지분을 통한 기업에 대한 통제 메카니즘을 건립한다. 공장장·사장은 이전에는 향촌 행정조직에 대해 책임을 졌지만 개조 후에는 주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으로 바뀌었다. 주주대표대회에서는 일반적으로 1주 1표제를 채택하고, 이사회 내부에서는 1인 1표제를 채택한다. 중요 문제에 대해 이사회에서 결정이 나지 않을 때에는 대주주에게 추가로 1표의 표결권을 주고 있다.

넷째로는 기업의 분배제도를 확립한다. 직공의 임금은 시간제 임금 혹은 성과급 임금제도를 채택하고, 연말결산 후 기업의 이윤 상황에 따라 주식배당을 실시함으로써 '노동에 따른 분배를 위주로 하고 주식에 따른 분배를 보조로 하는' 원칙을 견지하도록 한다. 또 기업의 자기축적과 발전능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기업축적(확대재생산투자)의 최저한도를 세후이윤의 50%로 규정하고, 주식배당의 최고한도는 주식금액의 20%를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세전이윤 중에서 먼저 10%를 사회보조비로 지출하고, 세후이윤은 일반적으로 '5 : 4 : 1' 혹은 '6 : 3 : 1'의 비율에 따라 '확대재생산투자', '주식배당', '직공의 복지·장려기금'으로 분배하도록 하고 있다.

2) 溫州모델[28]

溫州모델은 주로 규모가 작고 경쟁력이 약한 개체·사영기업과 聯戶기업이 전환하여 형성한 주식합작기업이다. 즉 복수의 개체·사영 향진기업이 자금을 공동출자하여 연합경영하고, 출자지분(주식수)에 따라 이익을 배당하며, 위험과 이익을 공동부담하는 것이다. 혹은 하나의 사영기업이 자금 마련과 규모확대를 위해 외부자금을 받아들여 주식합작제로 전환하는 경우도 있다. 주식합작기업으로 전환하는 주요 목적은 개체·사영기업의 민활한 경영메카니즘을 그대로 유지함과 동시에 기업규모를 확대하여 경쟁력을 높이

27) 논자에 따라서는 외자주를 사단법인주(혹은 개인주)에 포함시켜 전체 주식 구성을 국가주, 향촌집체주, 사단법인주, 개인주 등 네 가지로 구분하기도 하고, 또 향촌집체주에서 기업주를 분리시켜 주식 구성을 국가주, 향촌집체주, 기업주, 사단법인주, 개인주 등의 다섯 가지로 구분하기도 한다. 1991년 말 주촌구의 향촌 주식합작기업 319사의 주식자금 총액은 2억 9백만元이었는데, 이 중 국가주가 11.4%, 향촌집체주와 기업주의 합이 76.6%, 사단법인주가 5.9%, 개인주가 6.1%를 각각 차지했다 (王天義 외, 1997: 172; 邢瑩, 1993: 34)

28) 陳劍光, 1994: 406; 劉文璞, 1991: 52-53; 王天義 외, 1997: 163-170.

려는 것이다. 온주의 주식합작기업에는 다음 4종류의 유형이 있다.

①전원 출자식 주식합작제: 전직원이 일정액의 자금을 출자하여 모두 주주가 된다. 각 주주의 출자액은 동일한 경우도 있고 다소간 차이가 날 수도 있다. 기업의 창업자 혹은 경영관리자가 비교적 많은 자금을 출자하여 최대주주가 되는 경우가 보통이다.

②소수 주주 합과식 주식합작제: 소수의 주주가 공동출자하며 노동자를 고용해 경영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대부분의 종업원은 비주주이다. 溫州市 정부에서는 이런 유형의 기업을 규범화하기 위해 세후이윤의 분배방법을 다음과 같이 규정해 두고 있다. 즉 세후이윤의 50%는 각 주주에게 주식으로 분배하여 확대재생산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25%는 각 주주에게 현금으로 배당해주고, 15%는 분할할 수 없는 공공축적금으로 하여 기업 자체의 지배하에 두고, 10%는 직공의 상여금과 공공복리기금으로 사용한다.

③'총공장-분공장'(總廠-分廠)식 주식합작제: 이는 경영상태가 우수하고 비교적 규모가 큰 사영기업, 合夥기업(파트너식 기업) 혹은 향촌 집체경제조직을 중심으로 하여 동일 업종의 가내공업기업들이 공동 출자하여 설립한 지역성(社區性) 주식합작제 총공사(總廠)이다. 총공사는 통일적인 품질 및 수량관리, 가격관리(최저 판매가격 설정 등), 상표관리, 세수관리, 공동 은행계좌 개설, 원재료 공급과 제품판매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각 분공장으로부터 일정한 관리비를 수납한다. 각 분공장은 분산적으로 생산 경영하고 독립채산, 손익 자기책임을 진다.

④개체·사영기업과 향촌 집체기업의 연합경영식 주식합작제: 이는 주로 집체기업의 명의를 빌어 공동경영하기를 원하는 개체·사영기업이 집체자금을 일부 흡수하여 형성한 주식합작기업이다. 향촌집체 주주는 보통 공장부지와 건물, 설비등을 출자하고 개인은 자산을 출자한다. 이 유형의 기업은 보통 최대지분을 출자한 개인주주가 청부경영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와 함께 실제로는 사영기업이면서 편의상 집체기업의 명의를 빌어 그 하속기업으로 등록해 있는 '假集體(眞私營)기업'의 주식합작기업으로의 전환 문제가 남아 있다. 온주시에서는 기업의 자발적 동의의 전제하에 기존의 假집체기업들을 주식합작기업으로 개조하는 작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우선 기업의 자산을 재평가해 개인소유 부분과 집체 소유 부분을 엄밀히 획정하여 재산권 귀속관계를 명확히 한 후, 주식합작기업의 운영메카니즘을 채택하는 것이다.

2. 社區型 주식합작제

社區型 주식합작제는 사구성 합작경제조직에 주식제의 원리를 도입하거나, 원래의 村社 집체경제조직을 주식합작제도로 개조한 것이다. 이는 경제가 발달한 연해지역의 일부

향촌에서 원래의 촌사 합작경제조직을 모체로 하고 주식제의 재산권 조직형식, 경영방식과 분배방식을 도입·접목시켜 형성한 경제제도로, 노동의 연합과 자금의 연합을 통일시킨 것이다. 즉 토지의 집체소유와 집체재산 불분할의 원칙하에 장기에 걸쳐 축적한 집체재산을 재평가 과정을 거쳐 주식으로 환산하고, 이를 집체주와 사원주로 나누어 재편성한 경제조직인 것이다.

구체적 방법은 사구 합작경제조직의 집체재산의 전부 혹은 일부를 주식화하여 그 일부를 정해진 기준에 따라 주민들에게 분배해 주고, 이 기초 위에서 社區 농민의 현금을 출자주식으로 추가 흡수한다. 이렇게 하여 해당 사구 내의 전체 구성원을 주주로 하고, 주식합작제의 방식에 따라 집체경제활동을 조직·운영하는 것이다. 사구형 주식합작제의 주권은 일반적으로 집체주와 농민분배주로 나뉘는데, 집체주에 대한 배당(혹은 집체유보분)은 분배가능 순수입의 20~70%로서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29] 농민분배주는 오직 배당권만 있고, 저당, 양도, 상속, 퇴출은 불가능하다. 단 개인이 구입한 현금주식에 대해서는 상속, 양도, 퇴출이 허용된다 (陳劍光, 1994: 407-408).

사구형 주식합작제의 대표적인 모델에는 深圳市 寶安縣의 주식합작경제와 廣州市 天河區의 주식합작경제가 있다. 1992년 말 이미 심천시 보안현에서는 조건을 갖춘 행정촌 중 80%인 98개 촌에서 주식합작제를 실행하고 있고, 373개의 자연촌 중 94%인 356개 촌에서 주식합작제를 시행하고 있다. 또 광주시 천하구에서도 90%의 사구합작경제조직이 주식합작제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周錦廷·唐慧斌, 1993: 35).

社區型 주식합작제는 다시 자연촌, 행정촌 및 聯村(혹은 鄕·鎭)을 단위로 하는 세 가지 등급이 있다. 深圳市 寶安縣 橫崗鎭의 자연촌, 행정촌, 진의 3급 주식합작사(공사)가 가장 전형적인 예이다. 이하에서는 이를 중점적으로 소개한다.[30]

1) 자연촌 주식합작사

원래 자연촌 합작경제조직(이전의 생산대에 해당)의 집체재산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주식으로 환산한 후, 30%는 집체주로서 자연촌(촌민소조)이 보유하고 70%는 개인분배주로 주민들에게 분배해 준다. 보통 16세 이상(全노동력)은 1주씩, 16세 미만(半노동력)은

29) 분배주 주권의 확인은 일정 시점에서 호적에 등기된 농업인구를 기초로 하되 특수인구(재촌호구로서 외지 출가인구 등)는 절충해서 처리한다. 농민분배주의 분배는 구체적으로 ①연령을 불문하고 인구에 따른 평균적 분배, ②집체자산 형성에 대한 개인의 공헌(주로 재직 노동기간)에 따른 분배, ③노동력 등급 혹은 현시점에서의 집체재산에 대한 공헌능력에 따른 분배, ④위의 몇 가지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분배 등 몇 가지 방식이 있다. 또 많은 지역에서는 보편적으로 농민분배주의 분배는 출산계획 위반자, 범죄자, 치안교란자, 병역기피자, 삼림 도벌자, 노부모 부양이나 자녀교육 소홀자 등에 대해서는 분배를 제한함으로서 지역정부의 행정지도 목표 및 정신문명 건설과 연계시키고 있다.

30) 北京農大農經學院農業雙層經營課題組, 1992: 29-30; 周錦廷·唐慧斌, 1993: 35; 孔涇源, 1995: 26.

半株씩 분배한다. 개인이 분배받은 주식은 양도, 상속, 저당, 유통할 수 없다. 따라서 주식분배 후에도 집체재산은 분할되지 않는다. 촌주민은 분배받은 주식을 근거로 이익배당과 촌 주식합작사의 주요 의사결정 및 관리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주식합작사는 주주대표대회-이사회-經理(사장)제의 조직 관리체제를 갖는다. 이익배당은 연말(혹은 분기말)에 한 번씩 한다. 연말배당은 연간 총경영수입중 생산비용, 촌민소조 행정판공비, 국가세금, 대출금 이자, 고정자산 감가상각비, 복리기금 등을 공제한 후 나머지를 보유주식에 비례하여 분배해 준다. 단 집체주의 배당금은 집체경제의 확대재생산투자에 사용한다.

2) 행정촌 주식합작聯社

행정촌 주식합작연사는 원래 행정촌의 집체 총자산을 현재가치로 재평가해 주식으로 환산한 후 일부(보통 50%)는 행정촌(촌민위원회)에 유보하고, 나머지(50%)는 소속 자연촌에 분배해 준다. 자연촌에 대한 분배기준은 행정촌이 각 자연촌에서 징발한 토지의 양과 자연촌의 상주인구 수에 따른다. 자연촌이 분배받는 주식은 주주대표대회의 결의와 鎭정부의 허가없이는 양도, 분할, 저당할 수 없다. 행정촌의 촌민위원회와 자연촌의 촌민소조는 모두 주식합작연사의 주주가 되어 경영관리 참여권과 이익배당권을 가진다. 주식합작연사도 이사회 지도하의 經理(사장)책임제를 실시한다. 연말에 한 차례 이익배당을 하는데 분배원칙은 자연촌 주식합작사의 경우와 동일하다. 행정촌의 이익배당금은 행정촌 집체경제의 확대재생산투자와 주민들의 공공복리사업에 사용한다. 자연촌의 이익배당금은 촌의 집체복리 및 공공축적과 확대재생산투자에만 사용이 가능하고, 촌주민에게 분배할 수 없다.

3) 鎭 주식투자유한공사

진 주식투자유한공사는 각 행정촌이 투자하여 만든 株式公司의 초기자금을 기초로 하고 진주민과 홍콩, 마카오 및 해외화교의 자본출자를 받아들여 형성한다. 주주는 출자지분에 따라 이자와 이익배당을 받고 공사의 관리와 의사결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진 주식투자유한공사의 조직구조도 '주주대표대회-이사회-총경리' 제도를 채택한다. 공사의 세후 이윤 중 40%는 확대재생산투자와 경영보증기금으로 유보하고, 20%는 진의 복리기금으로 사용하며, 40%는 출자지분에 따라 배당한다.

VI.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자본 구성과 조직 및 분배

1. 주식 구성[31]

31) 이하의 설명은 農業部, 1992: 308-309; 1994: 66; 宗錦耀・鄒范鳴, 1994: 400-401; 梁義 외, 1993: 214-215; 岑耀劍, 1994: 52; 洪輝, 1996: 10-11; 王天義 외, 1997: 263-265 등을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주식 구성은 지역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1992년 12월 농업부의 <通知>에서는 주식합작기업의 주권을 향촌주, 기업주, 사회법인주, 개인주, 외자주 등의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그러나 지역에 따라서는 기업주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고 향촌주 속에 포함시키는 곳도 있고, 외자주를 사회법인주나 개인주 속에 포함시키기도 한다. 혹은 국가주를 기업주에서 분리하여 그 설치를 명문화하고 있는 곳도 있다.

향촌 주식합작기업의 가장 기본적인 주식은 향촌주와 직공 개인주이다.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시 원 기업의 자산을 재평가해 주식으로 환산한 후 향촌주와 직공 개인주를 설치한다. 여타의 주식은 지역별 주식합작제 규정이나(기업주와 국가주의 경우) 기업의 투자구조에 따라(사회법인주, 사회 개인주, 외자주의 경우) 설치 여부가 결정된다.

향촌주(혹은 향촌집체주)는 향촌 집체경제조직의 기업설립 초기 자금투자(토지사용권 포함)와 매년의 추가투입을 통해 형성된 자산을 주식화한 것이다. 이 주식은 명의상 향촌 범위내의 주민들이 공동 소유권을 가지지만, 실제로는 향진정부 혹은 그 산하의 농공상총공사가 소유권을 행사한다. 지역에 따라서는 이것을 향진정부주로 부르기도 한다.

국가주는 향촌 집체기업의 재산 중 국가의 감면세액과 중앙 및 지방정부의 지원금을 주식으로 환산한 것이다. 국가주는 보통 기업의 존속기간 동안 국가에 이전하지 않고 기업이 무기한 보유하기 때문에 기업주(혹은 향촌주) 속에 포함시켜 취급하기도 한다. 국가주의 주식 배당금은 개인에게 분배할 수 없고 오직 기업의 확대재생산 투자에만 사용토록 하고 있다.

기업주는 기업 직공들이 매년 공동으로 축적하여 형성한 자산 및 그 증식분을 주식화한 것이다. 이 주식의 일부는 분할할 수 없는 기업의 전체직공 소유로 하고, 직공대표대회 혹은 경리(공장장)가 그 소유권을 행사한다 (기업집체주). 나머지 일부는 직공들의 기업에 대한 공헌 정도(재직기간, 직위, 직무 등)에 따라 직공들에게 분배해 줄 수 있다(직공 분배주).[32]

개인주는 개인 소유 주식으로, 여기에는 직공 개인주와 사회 개인주가 있다. 직공 개인주는 다시 직공 분배주와 현금주로 구분된다. 직공 분배주는 주식합작기업으로의 개조시 직공이 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주식이다. 직공들은 이 주식에 대해 재직기간 동안 배당권만을 가질 뿐 상속, 매매, 양도할 수 없고, 기업을 사직할 때는 주식 소유권도 자동적으로 반납된다. 따라서 이것을 '虛株'(가공 주식) 혹은 '影子株'(그림자 주식)라고도 부른다. 많은 기업에서는 직공들에 대한 주식 분배의 전제조건으로 직공들로 하여금 일정 비율(직공 분배주의 50%~100%)의 현금 출자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렇게 직공이 기업에

32) 이 때 기업의 사장(공장장)이나 핵심 간부에 대해서는 그들의 경영 적극성과 책임감을 증대시키기 위해 일반 직공의 5-10배 혹은 지역에 따라서는 그 이상의 주식을 분배해 주기도 한다(陳劍光・李建珠, 1995: 281).

추가로 투입한 현금, 실물 등의 출자분 주식이 현금주이다. 직공 현금주는 원칙적으로 퇴출은 허용되지 않지만 상속, 매매, 양도는 가능하다.

사회 개인주는 기업 외부의 개인들로부터 받아들인 자금, 실물, 기술 등의 출자분을 주식화한 것이다. 또 사회법인주는 지역 내외의 사회법인(과학연구기관, 대학교, 기타 사회단체)이나 타기업이 투입한 자금, 설비, 원재료, 발명권, 특허권 등을 주식화한 것이고, 외자주는 외국(홍콩, 마카오, 대만 포함) 투자자가 투입한 자금, 실물, 기술 등을 주식화한 것이다.

주식합작기업의 주식은 또한 주식 소유자가 누리는 권리·의무의 성격에 따라 보통주와 우선주로 나뉜다.

보통주는 주식합작기업의 가장 기본적이고 큰 비중을 차지하는 주식으로, 주주는 기업의 경영 상황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고 주주총회에 참여하여 이사의 선출권과 기업 의사결정상의 표결권을 행사한다. 일반적으로 향촌집체주, 기업주, 직공 개인주는 보통주에 속한다.[33] 우선주는 기업의 경영 상황과 무관하게 일정율의 이자를 우선적으로 분배받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가로 이익 배당을 받기도 한다. 우선주의 이자율은 보통 은행이자율 혹은 회사채 이자율보다 약간 높게 책정된다.[34] 단 우선주의 이자와 배당금의 합은 기업의 자산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우선주는 또 기업 파산시 채무상환 후의 잉여자산에 대해서도 우선적인 분배권을 갖는다. 이처럼 위험부담이 적은 대신 우선주의 주주는 기업 의사결정상의 표결권이나 선거권,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일반적으로 사회법인주, 사회 개인주, 외자주 등은 우선주인 경우가 많다.

2. 자본금 구성

<표-4>는 1994년 전국의 향촌 주식합작기업의 자본금 구성을 정리한 것이다.

전체적으로 향촌 집체기업의 자본금 구성은 향촌집체 자본금이 약 절반 가까이를 차지하여 그 중심을 이루고 있다. 여기에 국가 자본금과 사회법인 자본금을 합치면 공유제적 성격의 자본금이 총 70% 가량 된다. 개인 자본금도 전체의 4분의 1 이상으로 비중이 크고, 외국자본 투자분을 합치면 사적 소유의 자본금이 30%가 넘는다. 집체소유의 향

33) 蘇州市의 경우와 같이, 지역에 따라서는 직공의 자금 출자를 장려하기 위해 직공 개인주 중 현금주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동안 당해년도 주식 배당금이 은행 저축이자율보다 낮으면 저축이자율 만큼의 기본 利息을 보장해 주기도 한다 (馬凱, 1993: 7).

34) 정책상 우선주의 이자율은 은행의 저축성예금 이자율 혹은 국채 이자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초과분은 세후이윤 중의 주식배당금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적자를 보거나 이윤이 없으면 자동적으로 우선주에 대한 초과분도 없어지게 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외부자금의 흡수를 위해 우선주 이자율을 저축성예금 이자율보다 5~10% 높게 책정하고 있다 (梁義 외, 1993: 234; 陳劍光·李建珠, 1995: 281)

촌기업이 주식합작제로의 개조를 통해(아직 공유 부분이 압도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공유제적 성격이 약화되고 사유제적 성격이 상당 정도 진전된 것을 알 수 있다. 또 향판기업과 촌판기업 중 상대적으로 소집체인 촌판기업에서 개인자본금의 비중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음이 주목된다.

<표-4> 전국의 향촌 주식합작기업의 자본금 구성(1994년)

구 분	합 계 (만元)	비 중 (%)				
		국가 자본금	향촌집체 자본금	外商 자본금	법인 자본금	개인 자본금
향촌기업 전체	10,565,043	2.6	48.9	4.7	17.4	26.4
향판기업	5,762,262	3.4	50.1	6.0	19.4	21.2
촌판기업	4,802,781	1.7	47.3	3.2	15.1	32.7

자료: 『中國鄕鎭企業年鑑』, 1995년판, pp.232-233으로부터 계산하여 작성.

이와 함께 향촌 주식합작기업의 자본금 구성은 각 성별로 매우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각 성별로 발달한 향진기업의 소유제적 성격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5>는 자본금 액수 상위 10개 성을 자본금 구성의 특징에 따라 세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본 것이다. 제1그룹은 전국 평균보다 향촌집체 자본금의 비중이 매우 높고 개인자본금의 비중이 낮은 지역으로, 山東省, 江蘇省, 遼寧省, 廣東省 등이 여기에 속한다. 향촌집체 자본금의 비중이 65.4%로서 가장 높은 강소성은 '蘇南모델'로 유명한 집체소유 향진기업이 전형적으로 발전한 지역이다. 또 산동성은 집체소유 향진기업의 주식합작제 개조 시험지구인 '周村모델'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이와 함께 광동성도 深圳市 寶安縣과 廣州市 天河區 등 社區型 주식합작경제가 전국에서 가장 발달한 지역이다.

제2그룹은 전국 평균과 대체로 비슷한 자본금 구성을 이루고 있는 지역으로, 河北省, 河南省, 湖北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제3그룹은 전국 평균보다 향촌집체 자본금의 비중이 매우 낮은 반면 개인자본금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으로, 浙江省, 江西省, 安徽省 등이 여기에 속한다. 이중 향촌집체 자본금의 비중은 25.6%에 불과한 반면 개인 자본금의 비중이 50%에 가까운 절강성은 개체·사영 향진기업이 전형적으로 발전하고 또 이들 개체·사영기업을 주식합작기업으로 전환하는 시험지구인 유명한 '溫州모델'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또 안휘성도 실질적으로 사적 소유인 호판·연호판 향진기업을 주식합작기업으로 개조하는 시험지구인 '阜陽모델'이 속해 있는 지역이다.

<표-5> 상위 10개 省의 향촌 주식합작기업의 자본금 구성(1994년)

省	합 계 (만元)	비 중 (%)				
		국가 자본금	향촌집체 자본금	外商 자본금	법인 자본금	개인 자본금
전 국	10,565,043	2.6	48.9	4.7	17.4	26.4
<제1그룹>						
산 동	1,967,579	1.1	59.0	5.8	13.4	20.7
강 소	1,484,975	0.5	65.4	3.7	13.5	16.8
요 령	479,419	1.0	58.7	1.4	14.8	23.6
광 동	609,700	2.1	53.5	-	23.6	20.8
<제2그룹>						
하 북	782,755	4.2	46.7	5.5	16.1	27.5
하 남	705,465	4.0	45.1	2.4	21.3	27.0
호 북	456,840	4.3	47.2	5.2	21.3	21.9
<제3그룹>						
절 강	1,249,387	0.8	25.6	3.7	20.7	49.1
강 서	443,808	5.7	39.9	6.9	14.7	32.8
안 휘	330,043	2.8	39.5	6.9	21.8	30.2

자료: 『中國鄕鎭企業年鑑』, 1995년판, pp.232-233으로부터 계산하여 작성.

<표-6> 주요 省의 향판 주식합작 기업의 자본금 구성(1994년)

省	합 계 (만元)	비 중 (%)				
		국가 자본금	향촌집체 자본금	外商 자본금	법인 자본금	개인 자본금
전 국	5,762,262	3.4	50.1	6.0	17.4	21.2
산 동	882,066	1.9	57.7	7.0	14.9	18.5
강 소	1,066,155	0.6	**66.7**	4.4	14.3	**13.9**
광 동	403,712	2.4	61.3	-	20.4	15.9
절 강	679,568	1.1	34.2	5.3	25.6	33.8
강 서	252,580	8.6	42.3	8.1	16.6	24.4
안 휘	221,709	3.5	38.9	9.6	23.5	24.6

자료: 『中國鄕鎭企業年鑑』, 1995년판, pp.234-235로부터 계산하여 작성.

<표-7> 주요 省의 촌판 주식합작기업의 자본금 구성(1994년)

省	합 계 (만元)	비 중 (%)				
		국가 자본금	향촌집체 자본금	外商 자본금	법인 자본금	개인 자본금
전 국	4,802,781	1.7	47.3	3.2	15.1	32.7
산 동	1,085513	0.4	60.2	4.8	12.2	22.4
강 소	418,820	0.3	62.1	1.9	11.4	24.2
광 동	205,988	1.5	38.2	-	30.0	30.3
절 강	569,819	0.5	**15.4**	1.9	14.9	**67.4**
강 서	191,228	1.9	36.9	5.4	12.2	43.8
안 휘	108,334	1.3	40.7	1.4	18.2	38.4

자료: 『中國鄕鎭企業年鑑』, 1995년판, pp.236-237으로부터 계산하여 작성.

<표-6>과 <표-7>은 제1그룹과 제3그룹에 속하는 성의 주식합작기업의 자본금 구성을 다시 향판기업과 촌판기업으로 세분하여 정리해 본 것이다. 향판 주식합작기업에 있어서는 제1그룹의 경우가 그 특징(높은 향촌집체 자본금 비중과 낮은 개인자본금 비중)이 더욱 뚜렷해지고, 촌판 주식합작기업에 있어서는 제3그룹의 경우가 그 특징(낮은 향촌집체 자본금 비중과 높은 개인자본금 비중)이 더욱 뚜렷해짐을 볼 수 있다. 여기서도 가장 대조적인 두 성이 江蘇省과 浙江省이다. 강소성의 향판 주식합작기업은 향촌집체 자본금이 전체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개인자본금은 14%에 불과한 반면, 절강성의 촌판 주식합작기업은 그와 정반대로 개인자본금이 3분의 2를 차지하고 향촌집체 자본금이 15% 정도에 불과하다. 즉 강소성의 향판 주식합작기업은 여전히 압도적인 집체소유의 성격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음에 비해, 절강성의 촌판 주식합작기업은 집체기업이라기보다는 이미 기본적으로 사유기업이라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라 판단된다.

3. 조직구조[35]

주식합작기업의 경영과 관리는 원칙적으로 직공 전원에 의한 민주적 의사결정 방식을 통해 이루어진다. 구체적으로 기업은 "주주총회--이사회--공장장·사장--직공대표대회"의 조직체계를 갖추도록 규정되어 있다.

주주총회는 기업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다. 주요 임무는 이사 및 감사를 선출·해임하고, 기업의 중요한 투자방향을 결정하고, 이사회의 연간 업무보고를 심사하고, 기업의 규정을 제정 혹은 개정하고, 기업의 합병과 해산을 결정하는 것이다.

35) 農業部, 1990b: 118-119; 梁義 외, 1993: 235-238; 曾福生 · 李明賢, 1994: 27-28.

이사회는 주주총회의 상설기구이다. 주요 임무는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을 집행하고, 민주적 절차에 따라 이사장을 선출하고, 공장장·사장을 초빙 혹은 해임하며, 분배방식을 제정하고, 기업의 자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공장장·사장은 기업의 법인대표로서 이사회에 대해 책임을 진다. 그는 기업과 맺은 경영청부 계약을 이행하고, 기업의 일상적인 생산 경영활동에 대해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사회와 공장장·사장은 지도-피지도 관계가 아니라 계약에 의한 감독-피감독 관계에 있다. 공장장·사장은 청부계약을 충실히 이행한다는 전제하에 기업 경영활동의 중심적 지위에서 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직공대표대회는 노동자의 권익을 대표하는 기구로서, 임금분배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고, 기업의 공장장·사장에 대한 評議權을 행사해 기업의 경영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한다.

주식합작기업의 각단계 관리기구의 권리와 의무는 주식합작기업의 관리규정을 통해 규범화되어 있고 법률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경영관리자에 대한 감독도 보장되어 있고, 그의 행위에 대한 제도상의 제어장치도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는 '정부와 기업의 미분리'(政企不分)의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기업 내부의 민주적 관리제도와 절차도 미비하며, 주주총회 내지 이사회의 설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곳이 많다. 농업부 <농촌주식합작제 과제조>가 1992년에 행한 전국 75개 현의 주식합작기업에 대한 조사에 의하면, 35%의 기업이 주주총회 혹은 주주대표대회를 설치하지 않고 있고, 46%의 기업에 이사회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36] 따라서 기업의 주인인 주주와 직공의 민주적 의사결정권과 관리권은 극히 불충분하며, 향촌의 黨政간부가 여전히 기업경영에 강력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 개체·사영기업을 기반으로 형성된 대부분의 주식합작기업에서는 대주주가 전권을 행사하고 여타 직공은 기본적으로 고용노동자의 신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주식합작기업의 관리 메커니즘을 개선하기 위해 ①정부의 직능을 전환하여 정부와 기업의 분리를 더욱 촉진하고, ②기업의 내부 규장제도를 개선하고 기업의 민주적 관리에 대한 감독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주요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4. 소득분배

농촌 주식합작기업 소득분배의 기본 원칙은 두 가지로서 첫째는 국가(혹은 향촌집체), 기업, 직공, 주주 등 이해 당사자인 4자의 이익을 균형적으로 함께 고려하는 것이고, 둘째는 노동에 따른 분배와 주식에 따른 분배를 상호결합하는 것이라고 말해지고 있다. 구체적으로 기업의 총수입에서 생산비용을 뺀 총이윤(=이·세총액)은 다음과 같은 순서

36) 農業部農村股份合作制課題組. 1993. 「'92中國農村股份合作制發展報告」. 『農村合作經濟經營管理』. 제8, 9기(曾福生·李明賢, 1994: 27에서 재인용).

에 따라 분배된다 (農業部, 1994: 66; 王天義 외, 1997: 273-276).

① 법규에 따른 국가 세금(소득세)의 납부[37]
② 과거 몰수당한 재산 손실분의 보전과 각종 세금 및 벌금 체납액의 지불
③ 전년도 기업의 경영적자분 보전
④ 법정 공적금과 공익금의 적립[38]
⑤ 임의 공적금의 적립
⑥ 우선주에 대한 이식 지불
⑦ 보통주에 대한 배당금 지급

다음에는 세후이윤의 위의 각 용도에 대한 분배 비율을 살펴보자.

1990년 2월의 <농민 주식합작기업 잠행규정>에서는 기업의 세후이윤 중 60%이상을 확대재생산 투자에 사용토록 규정하고, 이 중 30%는 분할할 수 없는 공공축적으로 하도록 했다. 나머지 40%를 가지고 주주에 대한 배당과 집체복리기금, 직공 장려기금 등으로 사용하는데, 주주에 대한 배당은 일반적으로 세후이윤의 2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 규정이 반포되어 전국 각지에서 시행된 후 주주의 이익이 너무 작고 기업과 직공의 이익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사회 자금의 흡수에 불리하다는 여론이 일었다. 그리하여 1992년 12월에 반포된 <향진기업 주식합작제의 추진과 개선에 관한 농업부의 통지>에서는 세후이윤의 60%를 확대재생산 투자에 사용하되, 이 중 20% 내외만 분할할 수 없는 공공축적으로 하고 나머지 40% 내외는 주식으로 환산하여 각 주주들에게 보유 주식수에 비례해 분배하도록 하였다. 또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도 25% 내외로 상향조정하고, 직공의 복리기금과 장려기금은 15% 내외로 하향조정하였다. 단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은 자금이윤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였다 (農業部, 1990a: 117; 1992: 310; 梁義 외, 1993: 233).

구체적으로는 물론 각 지역정부의 정책과 자체 규정에 따라, 그리고 기업 주식구성의 소유제적 성격에 따라 위의 분배 비율은 일정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예컨대 산동성 周村區에서는 세후이윤을 '5 : 4 : 1' 혹은 '6 : 3 : 1'의 비율로 확대재생산 투자, 주주에 대한 현금 배당, 직공의 복리·장려기금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단 주식배당금의 최고한도는 주식 원금의 20%로 제한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주식으로 환산해 분배해 준다. 또

37) 향촌 집체기업은 보통 소득세 납부 전에 총이윤의 10%를 사회보조성 경비로 지출한다. 이 중 일부는 농업 지원금으로 사용된다 (梁義외, 1993: 231).

38) 공적금이란 기업의 경영규모와 사업범위의 확대 및 장래의 적자 보전에 대비한 준비금을 말하며, 법정 공적금은 세후이윤(전년도 적자분 보전 후)의 10%이다. 법정 공적금 외의 임의 공적금 적립은 주주대표대회나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또 공익금이란 기업 직공의 집체복리에 사용하기 위한 기금을 말하며, 법정 공익금은 세후이윤(전년도 적자분 보전 후)의 5-10%이다.

강소성 蘇州市에서는 세후이윤의 20%를 공적금으로, 10%를 공익금으로 적립한 후 나머지는 주주들에게 분배해 준다. 물론 기업이 적자를 보면 배당금이 없지만, 다음해의 세전이윤 중에서 보전해 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邢瑩, 1993: 34; 王天義, 1997: 273; 岑耀劍, 1994: 52-53).

VII. 남은 문제들--맺음말을 대신하여

위에서는 지금까지 중국 내의 다양한 1, 2차 자료의 정리·분석을 통하여 중국 향진기업의 새로운 개조 형태인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전체적 모습을 개괄적으로 고찰하였다. 제I절 머리말에서는 본 연구의 의의를 제시하고, 제II절에서는 주식합작기업의 정의와 특징을 정리하였다. 제III절에서는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발전 배경과 개조의 목적을 고찰했으며, 제IV절에서는 발전 과정과 현황을 개관하였다. 제V절에서는 농촌 주식합작경제의 기본 유형과 주요 모델 및 개조방식을 살펴보고, 제VI절에서는 농촌 주식합작기업의 주식과 자본금 구성, 조직구조와 소득분배 등을 고찰하였다.

중국의 주식합작제는 1997년 9월의 당 제15차대회를 계기로 하여 금후 농촌의 향진기업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소형 국유기업과 집체기업에까지도 더욱 광범위하게 도입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논문의 고찰을 통해 중국에서 그 비중과 중요성이 더욱 높아가고 있는 (농촌)주식합작기업의 다양한 측면들에 대한 전체적 이해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로써 본 논문의 1차적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본 논문의 분석 수준은 아직 개괄적 수준에 그치고, 보다 깊이있는 질적 분석으로까지는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 이 과제는 지면의 제약으로 인해 별도의 논문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여기에서는 다만 본 주제와 관련해 금후 추가적으로 고찰되어져야 할 몇 가지 주요 문제를 제시하는 것으로 맺음말을 대신하고자 한다.

1) 주식합작기업은 중국에서 장기적으로 존속할 하나의 독자적인 기업형태인가 아니면 완전한 주식회사제도로 이행해 가는 과도적 형태인가를 둘러싼 논쟁[39]

2) 향촌 집체기업의 주식합작제로의 개조를 통해 그들이 목표로 했던 재산권의 명확화 문제, 정부와 기업의 분리 문제는 실제로 어느 정도 달성되었는가, 또 이를 통해 기업의 경영효율은 얼마나 향상되었는가에 대한 실증적인 조사와 고찰

3) 각 지역에 존재하는 매우 다양한 주식합작기업의 구체적 운영실태에 대한 파악과, 이들 기업중 어느 범위까지를 주식합작기업의 범주에 포함시킬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

39) 특히 이 문제는 금후 주식합작기업의 발전 방향과 장기적 운명을 결정지을 가장 핵심적인 이론적·실천적 문제라고 생각한다. 1997년 9월 당 제15차대회에서의 강택민의 <정치보고>를 통해 주식합작제는 주식제와 함께 다시 한 번 공식적인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학자들과 정책담당자들 사이에서 위의 논쟁은 완전히 끊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王天義, 1997: 129-135; 洪輝, 1996: 13 및 厲以寧 主編, 1994: 38-41 등 참조.

4) 주주총회와 이사회에서 기업의 중요 문제 결정시 '1인 1표제'와 '1주 1표제' 중 어느 것이 합리적인가, 만일 '1주 1표제'를 채택한다면 이는 민주적 의사결정과 기업관리라는 기본원칙에 위배되지 않는가를 둘러싼 논의

5) 기업 설립시 향진정부의 직접투자가 없었던 경우에도 향진정부에 주식을 분배해 주어야 하는가, 만일 기업 발전에 대한 간접적 공헌의 대가로[40] 주식을 분배해 준다면 그 분배분은 얼마로 하는 것이 합리적인가를 둘러싼 논의

6) 개인들이 투자하여 설립한 주식합작기업에서 분할할 수 없는 기업집체주의 설치가 필요한가를 둘러싼 논쟁

참 고 문 헌

<資料>

國家統計局 編. 1994. 1995.『中國統計年鑑』. 中國統計出版社.

中國鄉鎭企業年鑑編輯委員會 編. 1994, 1995.『中國鄉鎭企業年鑑』. 農業出版社.

江澤民. 1997.「高擧鄧小平理論偉大旗幟,把建設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全面推向二十一世紀」.『求是』. 제18기.

農業部. 1990a.「農民股份合作企業暫行規定」.『中國企業管理年鑑』. 1991년판.

_____. 1990b.「農民股份合作企業示範章程」.『中國企業管理年鑑』. 1991년판.

_____. 1992.「關于推行和完善鄉鎭企業股份合作制的通知」. 梁義・韓琦・關乃孚 主編.『鄉鎭股份合作企業組建與運作』. 中國經濟出版社.

_____. 1994.「鄉鎭企業産權制度改革意見」.『中國鄉鎭企業年鑑』. 1995년판.

<硏究文獻(單行本)>

梁義・韓琦・關乃孚 主編. 1993.『鄉鎭股份合作企業組建與運作』. 中國經濟出版社.

勵以寧 主編. 1994.『鄉鎭企業股份制--組建與運作』. 中國人民大學出版社.

王天義・楊歡亮・喬傳福. 1997.『中國股份合作經濟--理論, 實踐與對策」. 企業管理出版社.

中華人民共和國 農業部等 編. 1990.『中華人民共和國鄉村集體所有制企業條例條文釋義』. 中國法制出版社.

曹風岐 主編. 1993.『中國企業股份制的理論與實踐』(修訂版). 企業管理出版社.

陳乃醒・胥和平・王延中. 1994.『中國鄉鎭工業發展的政策導向硏究』. 經濟管理出版社.

古澤賢治. 1993.『中國經濟の歷史的展開』. ミネルウ書房.

40) 많은 경우 향진정부는 향촌기업 설립시 자금과 설비의 직접투자는 없었더라도 기업의 설립을 앞장서 조직하고, 은행 대출의 담보를 서 주고, 기업의 간부를 선발・임명하고, 노동자의 선발 채용에도 간여했다. 또 세금의 우대 감면, 원재료 확보와 판로 개척, 기술과 정보의 제공 등의 면에서 기업발전에 다양한 도움을 제공하였다 (서석흥, 1996b 참조).

<硏究論文>

서석흥. 1996a.「중국의 향진기업: 그 발전, 성과 및 과제」.『중소연구』. 한양대 중소연구소. 봄호(제20권 1호).

_____. 1996b.「중국 향촌기업의 운영실태와 성장의 특징에 관한 연구」.『중국문제연구』. 경성대 중국문제연구소. 제8집.

孔涇源. 1995.「農村股份合作經濟及其制度剖析」.『經濟硏究』. 제3기.

馬凱. 1993.「蘇南模式」的新突破--蘇州鄕鎭企業試行股份合作制的調查與思考」.『瞭望』. 제50기.

北京農大農經學院農業雙層經營課題組. 1992.「農村股份合作制若干問題探討」.『農業經濟問題』 제9기.

査振祥. 1994.「論我國農村股份合作制産生的背景」.『農業經濟問題』. 제7기.

安希伋. 1992.「中國農村股份合作企業的興起及其前景」.『農業經濟問題』. 제8기.

王天義・徐國華. 1996.「論股份合作經濟的內涵與外延」.『經濟管理』. 제11기.

劉文璞. 1991.「社會主義與農民財産權--溫州股份合作試驗的啓示」.『中國農村經濟』. 제11기.

岑耀劍. 1994. 關于蘇州鄕鎭企業試行股份合作制的調查」.『經濟管理』. 제2기.

宗錦耀・鄒范鳴. 1994.「鄕鎭企業産權制度改革基本思路」.『中國鄕鎭企業年鑑』, 農業出版社.

周錦廷・唐慧斌. 1993.「經濟發展與制度變遷--我國農村股份合作制發展與成長的探討」.『農業經濟問題』. 제3기.

曾福生・李明賢. 1994.「我國農村股份合作經濟的運行」.『農業經濟問題』. 제7기.

陳劍光. 1994.「鄕鎭企業股份合作制主要模式」.『中國鄕鎭企業年鑑』. 農業出版社.

_____・李建珠, 1995.「産權制度改革-股份合作制」.『中國鄕鎭企業年鑑』. 農業出版社.

陳劍波. 1994.「社區産權與鄕鎭企業的高速成長」. 亞洲開發銀行・Ford基金會・中國留美經濟學會 主辦 鄕鎭企業産權明晳化: 理論與實踐 國際硏討會 發表論文. 杭州.

邢 瑩. 1993.「走向廣闊天地的股份合作制」.『經濟體制改革』. 제8기.

洪 輝. 1996.「股份合作制改革與中國大陸鄕鎭集體企業--浙江與江蘇兩省的發展現況硏究」.『中國大陸硏究』. 제4기.

嚴善平. 1992.「鄕鎭企業內の勞動力市場の硏究(I)」.『アシア經濟』. 5월호.

佐藤宏・大島一二. 1992.「經濟調整下の鄕鎭企業の動向と役割--無錫縣H鎭村營企業の事例調査--」.『アシア經濟』. 2월호.

Wang Xiaolu. 1990. "Capital Formation and Utilization." *China's Rural Industry: Structure, Development, and Reform.* ed. William A. Byrd and Lin Qingsong.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A STUDY ON THE CHINESE RURAL SHARE-HOLDING COOPERATIVE ENTERPRISES

SUH SUK-HEUNG
Vice-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Pukyong National University

The most important motive power that made the high speed(about 10% a year) growth of Chinese ecomony in the reform era possible was the sudden rise of rural enterprises. While rural enterprises have stronger market adjustment and more prompt management mechanism than state-owned enterprises have, on the other hand they have problems of indistinctness in property right, insepa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enterprises, small scale, funds shortage, and the falling behind in the level of management and technique.

As a try to improve these problems, from the middle of the 1980s rural enterprises have voluntarily changed their enterprise-form into share-holding cooperative enterprises in some Chinese rural community and from the 1990s thanks to government's encouragement and systematic support, the changing speed has become faster. According to the investigation of 1995, about 3million rural enterprises (15% of the all rural enterprises) were enforcing share-holding cooperative system. It is judged that introducing share-holding cooperative system into rural enterprises is the kernel reform equal to introducing modern company system into urban state-owned enterprises from 1994. In addition, it is expected that with the Chinese Communist Party-15th rally september 1997, share-holding cooperative system is going to be introduced into urban small and medium-sized state-owned enterprises and collective enterprises as well as rural enterprises more widely.

In this paper I studied the general figure of rural share-holding cooperative enterprises by arranging and analyzing the various first, second data. I presented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n chapter I and arranged the definition and special feature of share-holding cooperative enterprises in chapter II, studying the development background and the reform purpose of rural share-holding cooperative enterprises in chapter III and surveying the development process and the present condition in chapter IV. And I looked into the basic form, main model and reform way of rural share-holding cooperative economy in chapter V, investigating the stocks-funds formation, structure, and income distribution of rural share-holding cooperative enterprises in chapter VI. Finally in chapter VII, I presented several main problems to be studied afterwards relating to this subject.

서석홍. 부산시 남구 대연3동 599-1. 부경대학교 경제학부 부교수. Tel: 051) 620-6652(O), 621-9708(H).